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3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 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품목	세부품목
주식회사 피엠그로우 (대표: 박재홍)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벨리로 431, (주)피엠그로 우 배터리 그린 사이클 캠프	2023.12.21.	제2023-4호	① 재사용전지 모듈	① 재사용전지모듈 비교: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용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스템 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